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4. 10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4. 1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4. 1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)

가. 제안이유

○ 자연학습장 내 자연생태박물관의 시설확대와 시립식물원, 농경유물전시관, 어린이동물원 등의 주요시설물의 신축 및 기능확대에 따라 시설물과 전시물의 유지·관리비 증가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사용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자연학습공원 관람료 인상(안 제2조 별표 1)
-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도록 함(안 제17조제4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관람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지? 현재도 비싸다고 보는데 또 인상하면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텐데 입지 조건도 양호하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</p>	<p>○ 2층 공동관 개관에 따라 단체 200원은 너무 싸며 홍보에 따른 인쇄비, 홍보비 등을 감안하여 인상한 것이며, 타시·군에 비해 저렴합니다.</p>

<p>도록 저렴해야 될 것임</p> <p>○ 영상관 관람료와 자연학습장 관람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?</p>	<p>○ 영상관 시설은 되어 있으나 무역개발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일정액으로 책정은 곤란합니다.</p>
--	---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요구액대로 올려줌이 타당함

나. 반대토론

- 단체는 상향조정하고 개인은 하향조정함이 타당함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62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자연학습장 내 자연생태박물관의 시설확대와 시립식물원, 농경유물전시관, 어린이동물원 등의 주요 시설물의 신축 및 기능확대에 따라 시설물과 전시물의 유지·관리비 증가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사 용료의 싼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자연학습공원 관람료 인상(안 제2조 별표 1)
-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입하도록 함(안 제17조제4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30/100”을 “100분의 20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1]

자연생태전시관·시립식물원 관람료(제12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자연생태전시관		시립식물원		비 고
	개 인	단 체	개 인	단 체	
0~3세 어린이, 노인(65세 이상)	무 료	-	무 료	-	○ 유아원·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도 단체 인 솔일 때는 단체요금 을 적용 ○ 제복을 입은 하사 이 하의 군인
4~12세 어린이	600	500	500	200	
중·고생, 군인	800	600	700	300	
어른	1,000	700	1,000	600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사용료) ①~③(생략) 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 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/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	제17조(사용료) ①~③(생략) ④..... 100분의 20.....
[별표 1] 자연학습장 관람료	[별표 1] 자연생태전시관·시립식물원 관람료 (단위 : 원)

구 분	개인	단체	비 고	구 분	자연생태 전 시 관		시 립 식물원		비 고
				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0~3세 어린이 노인(65세 이상)	무료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아원·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도 단체 인솔일 때는 단체요금을 적용 ○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	0~3세 어린이 노인(65세 이상)	무료	-	무료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아원·유치원의 경우 20인 이하도 단체 인솔일 때는 단체요금을 적용 ○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
4~12세 어린이	<u>500원</u>	<u>200원</u>		4~12세 어린이	<u>600</u>	<u>500</u>	<u>500</u>	<u>200</u>	
중·고생, 군인	<u>700원</u>	<u>300원</u>		중·고생, 군인	<u>800</u>	<u>600</u>	<u>700</u>	<u>300</u>	
어 른	<u>1,000원</u>	<u>600원</u>		어 른	<u>1,000</u>	<u>700</u>	<u>1,000</u>	<u>600</u>	